

국정원
'내란음모' 사태

토론을 위한

10문 10답

국정원 '내란음모' 사태 10문 10답

1. 국정원은 왜? 04
2. 내란음모가 무엇이기에? 07
3. 너도 중복이냐? 11
4. 분단 국가에서 국가보안법은 필요한 것 아냐? 15
5. 간첩 잡는 국가정보원은 필요한 것 아닌가? 18

글 읽는 순서

- | | |
|--------------------------------------|----|
| 6. '사상의 자유'는 인정한다 해도 폭력은 문제 아닌가? | 21 |
| 7. 전쟁 위기는 솔직히 과장된 것 아닌가? | 25 |
| 8.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도 없는 것 아냐? | 27 |
| 9. 공당(公黨)이라면 헌법과 법률을 잘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 31 |
| 10. 진보진영은 무엇을 해야 하나? | 34 |



국정원은 왜?

국정원이 왜 하필 이 시기에 갑자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렸는지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정권의 정당성이 의심받고 국정원의 ‘생존권’이 위협당하자 일종의 ‘마녀사냥’을 통해 정국을 전환하려는 의도인 것이지요.

사실 박근혜 정권은 출발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는데, 부정 부패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인사를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작자가 성추행 추문을 저지르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권은 대형 폭탄을 맞게 됩니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



정원 해체 요구가 빗발치고 촛불집회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이고 야당이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는 등 사태가 연일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박근혜 대통령은 8월 초 ‘유신 검찰’ 김기춘을 비서실장에 전격 임명하였습니다. 기존의 홍경식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장관에 이어 공안검사 출신들을 전면으로 포진시킨 것이지요. 대대적인 공안탄압을 예고한 셈입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비상하게 고조되었다는 사실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남재준 국정원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 군부 출신을 주요 외교 안보 라인에 배치시켰

는데, 그 결과 정부 내에서 대북 강경론이 득세하는 한편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의 강도도 점차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활동가 9명이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 중 5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평화협정 체결,’ ‘대북 적대정책 폐기’ 등의 주장까지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동조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이 이적이라면 전쟁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드는 대목이죠.

현재 국정원의 수사 행태를 보면, 이들이 법 절차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여론재판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데도 국정원은 언론에 녹취록을 흘리는 등 치졸한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통상 공안사건의 경우 기소, 즉 공소제기 시점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함께 발표하는데, 기소는커녕 구속 전부터 이미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들을 계속 언론에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심지어 검찰조차 국정원의 지나친 언론플레이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불만을 토로하는 지경입니다.

국정원은 장기적인 폭로전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에 맞춰 양파껍질 벗기듯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를 터뜨릴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둔갑시켜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정원 개혁 여론을 사그라지게 하려는 것이죠. 이런 국정원의 의도에 끌려가면 합리적인 논쟁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내란음모가 무엇이기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0년 만에 내란음모란 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침탈,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토침탈은 일부 지역을 점거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배제하는 것이고 국헌 문란은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든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의 범죄는 결정적으로 범죄로 나아가는 단계를 거쳐야만 처벌할 수 있는 반면 내란죄는 아직 범죄로 나아가지 않은 단계인 예비나 음모도 처벌되는 예외적 사례에 해당합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죄가 적용된 것이고 김대중은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것입니다. 예

비는 실질적인 준비가 있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인데 음모는 범죄실행의 합의만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처벌대상이 되어야 하는 실행행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비정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독일 같은 나라는 예비는 처벌하지만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내란음모라는 혐의가 적용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장군의 아들’로 유명세를 얻은 김두한인데요. 김두한은 1965년 한일협정을 반대하면서 당선되었는데 다음해 초 ‘5단계 혁명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전복을 기도하였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됩니다. 그러나 김두한은 무죄판결을 받았죠. 이때에도 박정희 정권의 내란음모 적용은 한일협정으로 팽배해진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박정희 정권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외에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심재권 민주당 의원, 이신범 전 신한국당 의원, 고 조영래 변호사와 고 김근태 의원 등입니다. 이들은 ‘폭탄을 이용하여 주요 관공서 파괴·점령과 박정희 대통령 하야를 도모하는 등 헌법기능을 정지시킨 뒤 정부전복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역시 내란음모 부분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무죄 선고 시점이 유신 개헌이 이미 완료된 1972년 12월 말이었던지라, 이들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의 수사는 유신 개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박정희 정권은 다시 한번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립니다.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그것입니다. 검찰은 대구·경북지역 진보 인사들이 ‘1964년 와해됐던 인혁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유신반대 투쟁을 조종하고 북한의 사주를 받아 정부 전복 활동을 도모했다’는 혐의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유흥준 전 문화재청장, 장영달 전 의원 등 수백 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때 이용훈 등 담당 검사들은 증거가 없다며 사표를 내기도 했지만, 결국 인혁당 재건위 내란음모의 주범으로 꼽혔던 도예중 등 8명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이 판결 이후 불과 18시간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사법살인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비난이 있었지만 유신 반대

투쟁을 잠재우려던 박정희 정권은 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법원은 2007년 1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수사기관의 조작, 고문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또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도 2009년 9월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심 결과까지 포함한다면 역사적으로 어느 것 하나 유죄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출하던 국민적 저항을 잠재우고 국면을 전환하는 데에 ‘내란음모’는 유효하게 작용했습니다. 김두한 내란음모 사건으로 한일회담 반대의 흐름을 위축시켰고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유신개헌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민청학련 사건으로 유신에 대한 저항을 잠재웠습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일어난 1980년은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장악으로 전국적인 시위가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번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국정원이 언론에 유포한 녹취록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법률적으로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 형법은 조건부 고의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확정적인 범죄실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녹취록으로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역할분담을 포함하는 범죄실행의 합의도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형사법의 집행당국인 국정원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자신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국정원의 저의가 다른 곳에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도 종북이냐?

먼저 종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겠습니다. ‘종북’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을 봅니다. 마녀사냥은 중세후기에 사회 위기에 대한 책임을 교회와 국가로부터 가상의 괴물에게 전가시킨 제도적 장치였다고 합니다. 사회적 불안 심리를 가상의 대상에 대한 공포로 변환해 불만의 배설장치로 사용한 것이지요. 어떤 학자는, 조금 더 특수하게 마녀사냥이 중세 기독교 성직자들이 갖고 있던 의료와 위생에 대한 권력을 방어하는 데 그 연원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민간 약초학의 입지를 줄이기 위해 치료의 권리를 빼앗아 약초 등을 다루는 민간의술을 악마화한 것이지요. 마녀

사냥의 역사적 근원을 어떻게 보든 마녀사냥의 본질은 ‘반합리성’에 있습니다.

마녀사냥은 다음 두 단계를 거쳐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마녀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합리적 이성을 가지지 못한 존재로 취급됩니다. 그들이 가진 약초에 대한 지식, 날씨에 대한 지식 등을 악마의 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마녀를 심판하



는 이들도 자신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필요가 없다고 간주합니다. 이미 ‘마녀’들에게서 이성을 박탈했기 때문에 지성을 가진 인간들에게나 적용되는 증거나 재판 절차도 불필요하며 특히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줄 이유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두 단계의 반합리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마녀사냥의 본질을 이룹니다.

종북 딱지 붙이기도 완전히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은 모든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존재로 규정됩니다. 오로지 북한의 명령에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판단력이 결여된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과는 정당한 논쟁을 하지 않고 그들을 조롱하거나 공격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우파들의 태도에 대한 변명이 됩니다. 상대방을 비이성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비이성을 옹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합리적인 재판 절차 따위는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오로지 광기어린 선동과 여론재판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녀사냥은 사태를 지극히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합리적 공론장을 없애고 다만 증오와 원한을 부추겨 정치의 공간에서 시민들을 축출하기 위한 의도를 갖는 것이지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소위 ‘종북’이라는 신조어는 과거 2001년 즈음에 민주노동당과 경쟁하던 다른 진보정당에서 처음 만든 말입니다. 당시에 이 말은 사회운동 안에서 민족해방(NL) 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보다는 진영 논리에 입각한 갈등과 적의를 증폭시키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이후 ‘종북’이라는 말은 우파들의 색깔론에 무차별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런 색깔론이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대중의 공포를 자극해 진보진영

전반에 대한 혐오와 ‘백색 테러’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6일, 구속된 이모 씨의 부인 윤모 씨는 접견을 위해 집을 나서던 도중 크게 놀랐습니다. 윤씨의 흰색 승용차에 붉은색 페인트와 검은색 스프레이로 ‘간첩’이라고 크게 낙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경희대학교에서 ‘자본주의 똑바로 알기’를 강의하는 이모 씨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2학기 강의를 준비하던 임씨는 학교 관계자로부터 한 학생이 자신을 국정원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가기관의 폭력과 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언론과 보수정당이 대중들의 폭력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반이성적 중복 딱지붙이기를 멈춰야 합니다.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에게 붙여진 낙인을 떼어내고 그들이 정당한 토론의 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사상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면 그때 그들의 노선과 정세인식, 북한에 대한 입장을 갖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숙의해야 합니다. 합리적 공론의 공간을 없애려는 시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옹호되어야 할 것은 이성적 토론과 정치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사상에 대한 온당한 비판도 가능할 것입니다.



분단 국가에서 국가보안법은 필요한 것 아냐?

1948년 말 국가보안법이 탄생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외부의 적이 아닌, 국가 내부에서 결사 또는 단체를 결성하여 ‘국헌을 위배한 내부의 적’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일제 치안유지법의 연장이며 헌법 정신과 충돌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적과 대치하고 있는 비상한 시기’라는 논리로 무력화하기 때문이지요.

처음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양형은 최고 10년형이었다가 그 이듬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또 직접적 결사뿐

만 아니라 ‘협의, 선전, 선동’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반국가단체’의 성격과 범위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반국가단체를 ‘적’이라 규정하고, 심지어 ‘불고지’(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조항이 만들어지는 등 계속해서 개악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현재 40개 조의 방대한 법률이 되었습니다.

이 중 대표적으로 7조의 ‘찬양, 고무’ 조항 등은 너무 막연하여 ‘코에



결면 코결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자의적 해석의 폭이 너무 넓습니다. 실제 국가보안법 기소자의 대부분이 7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는 권력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과거의 중정과 안기부를 거쳐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국가정보기관이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공안사건, 간첩사건을 조작해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군사독재 정권만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군사독재 시절 ‘빨갱이’ 공세에 희생당했던 역사를 가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의 실제 위협이 축소되고 남한의 군사력이 압도적 우위에 있어도 국가보안법은 존재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저항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존재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기소자 중 결과적으로 실형을 받는 사람이 10%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2005-2008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실형률은 12%에 불과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정권과 체제에 비판적인 모든 사회운동을 ‘국가 내부의 적’으로 지목하여 탄압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정권에 위기가 닥칠 때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가의 보도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진보를 탄압하는 데 봉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지금 당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간첩 잡는 국가정보원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번 사태를 통해 국정원이 퍼뜨리고자 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국정원이 ‘땀글이나 다는’ 곳이 아니며, ‘이렇게 무시무시한 내란을 피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식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간첩을 잡는다,’ ‘안보를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국정원이 해왔던 일들을 보면 이들이 사실상 체제 유지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관여한 공안사건들은 대개 국가보안



법에 빌붙은 수많은 날조와 조작,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공작,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마녀사냥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를 거쳐 현재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국가정보기관은 수많은 공안사건과 간첩사건을 조작해냈습니다.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1961), 인혁당 사건(1964), 동백림 사건(1967), 납북어민 서창덕 간첩조작 사건(1967), 이수근 간첩조작사건(1967),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1973), 민청학련 사건(1974),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1980), 아람회 사건(1980), 수지김 사건(1987)을 비롯하여 최근의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작임이 드러났고 무죄로 판명된 사건들입니다.

국가보안법 사범을 다루는 수사기관은 초법적인 권력을 가지며 국민들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터뜨리기식' 언론대응을 통해 수사의 결과, 다시 말해 사건의 진실과는 무

관하게 자신들이 의도한 효과를 누립니다. ‘일단 터뜨리고 보고’ ‘정보와 발언권을 독점한 가운데’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한 막연한 공포심과 적개심을 유포하고’ ‘나중에 아니면 그만’인 식이죠.

또한 국가정보원이 정작 국가안보와 관계없는 정치인 사찰과 불법도감청을 계속해왔으며, 법원 또는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무차별한 사찰활동을 벌여왔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인권침해적 수사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과도한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무분별한 혐의사실 공표로 인해 ‘빨갱이’나 ‘간첩’으로 낙인찍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식입니다.

국정원은 분단 상황을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공포정치를 확산하고 국가기관의 통제력을 강화하며 정치·사상의 자유 등 민주주의를 침해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은 당장 축소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사상의 자유’는 인정한다 해도 폭력은 문제 아닌가?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녹취록 상의 발언이 조작된 것이며 상당부분 부풀려진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의 내용을 사실이라 예단하고 그에 관한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설사 그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발언 자체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앞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녹취록에서 엿보이는 이석기 의원 등의 정세인식이나 전술방침의 문제점에 대해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몇 가지 비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안당국이 공개한 5월 회합 녹취록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 등은 북미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 구도를 미국 제국주의의 ‘불의의 전쟁’과 북한 사회주의의 ‘정의의 전쟁’이라는 구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북미 대결 구도에서 북한의 핵무장이 평화협정 체결의 지렛대라는 이들의 정세인식은 북미 간 역관계에 대한 오판일 뿐더러 핵전쟁의 특성에 대해 맹목적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위험합니다.

또 이들은 주요 시설에 대한 타격을 은밀히 수행하는 것을 ‘유사시’ 행동지침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회운동이 채택하는 반전평화의 보편적 행동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세간에서 흔히 조롱 하듯이 ‘시대착오적’이라거나 또는 단지 ‘폭력적’이어서가 아닙니다. 평화운동의 역사 또는 사회주의의 전통에서 전쟁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최선의 행동으로 채택되었던 대중적 반전시위나 총파업이

아니라 일종의 군사주의를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이들이 ‘유사 시’에 남한의 대중운동에 기초한 전술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역량을 지지, 보속한다는 관념에 기초한 전술을 고려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자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 대중노선에 입각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가령 제1차 세계대전을 예고하는 암운이 유럽 전역에 짙게 드리워졌던 1912년, 제2인터내셔널이 긴급하게 소집한 바젤 특별대회에서는 군국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대중적인 캠페인을 모든 나라에서 벌일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은 단연코 반군국주의 총파업이었습니다. 그밖에도 전쟁 공채 발행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이나 전쟁물자의 준비에 협조하지 않는 비협조 직접행동 등도 시도되었습니다.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제정 러시아에서 의회를 창설하고 여기서 광범위한 반전 여론을 이끌어낸 힘도 사실 노동자들의 총파업이었습니다.

평화운동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인 징병거부 운동도 마찬가지로 대중운동에 기초했습니다. 징병거부 운동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평화주의에 근거하지만 많은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도 자신의 신념을 근거로 징집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버틀랜드 러셀 같은 자유주의자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했을 만큼 그 동의 지반이 광범위합니다. 양심적인 병역거부 운동을 자기사명으로 하는 전쟁저항인터내셔널(WRI)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영국·소련·일본·홍콩·멕시코·캐나다 등 전 세계에 걸쳐 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잠시 이들과 협력했다고 알려져 있지요.

사회주의 전통이나 평화주의의 역사를 볼 때, 군사주의를 모방하여

소수가 비밀리에 전개하는 전술은 전쟁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올바른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해방전쟁과 방어전쟁의 구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자와 평화주의자들은 침략전쟁과 자위전쟁의 구별조차 명확히 거부해 왔습니다.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인민의 이익을 위한 전쟁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모든 인민들은 국제정세에서 발생하는 전쟁의 위협을 처음부터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전쟁 위기는 솔직히 과장된 것 아닌가?

북한이 2000년대 이후의 교착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핵 역량을 제고하고 있음은 앞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대응하여 미국도 군사적 압박, 경제적 제재, 외교적 고립을 통해 대북 봉쇄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금융위기·경제위기의 돌파구로서 '태평양으로의 선회'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미일동맹과 한미동맹도 점점 호전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빌미로 동아시아에서 핵·군비를 계속해서 증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승리하는 핵전쟁'이라는 신화에 따라 일본과 남한에 미사일방어망(MD)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

니다. 박근혜 정부도 미국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하위 파트너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 상반기 한반도에서는 한미동맹 대 북한의 군사적 대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게 펼쳐졌습니다. 전략폭격기 B-52, 스텔스폭격기 B-2, 핵잠수함 사이엔을 동원한 한미동맹의 대북 핵위협 속에서 북한도 ‘정전협정 백지화,’ ‘핵 선제 타격권 행사,’ ‘남북 불가침합의 무효,’ ‘남북 관계 전시상황 돌입’ 등으로 맞섰습니다.

전쟁 위기는 과장된 허구가 아니라 엄연한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펼쳐진 군사적 대결은 한반도에서 재래식 군사적 충돌은 물론 핵전쟁의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중단하고 종국적으로 비핵지대를 구축하려는 평화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정세입니다.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나?

어떤 이는 통합진보당을 ‘정치적 발달장애’라느니 ‘돈키호테 식 과대망상’이라며 조롱하기 바쁩니다. 심지어 ‘사회적 고립에서 오는 현실적 무력감을 심리적으로 보상받으려고 과격한 환상을 집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이 정당한 근거를 갖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회변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내팽개친 청산주의자들의 비난이 아니라, 사회변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멈추지 않는 사회운동가들의 비판적 토론이 필요합니다. 토론을 위해 민족해방 노선의 역사적 모순을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북한이 평화공존론을 채택한



이래 남한의 민족민주 운동은 ‘사회주의 조국’으로서 북한을 보위하는 역할로 자기 지위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1985년 한국 민족민주전선으로 계승됩니다. 1980년대 북한은 1970년대 이후 평화 정착 및 남북합작방식의 통일론을 재확인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자주정부 수립을 주장합니다. 이에 조응하여 1980년대 중후반 한국사회성격논쟁을 거치며 ‘식민지반봉건/반자본주의사회론-민주자주정부론-완전연방제론’으로서 민족해방 노선이 정립됩니다.

그런데 탈냉전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었고, 이 외중에 경제위기와 함께 에너지위기와 식량위기가 발생하면서 북한경제는 붕괴합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에 경제위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선군정치가

출현합니다. 선군정치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등장했습니다. 선군정치 하에서 군은 당을 제치고 체제의 중심 기구로 위상이 제고되었고, 당에 의한 군의 통제를 통해 인민의 우위를 정립시키는 사회주의적 통치 방식이 이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주의적 자원 배분 체계가 왜해되고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체제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북한 나름의 대응이 선군정치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와 함께 극단화된 스탈린주의로서 수령론을 핵심으로 하는 김일성주의는 부자세습이라는 형태로 재생산됩니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대외전략은 ▲북미수교를 통한 안전보장의 획득 ▲북일수교를 통한 경제적 지원의 획득 ▲남북관계의 안정화(2국가 2체제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한미일 삼각동맹의 압박 속에 북한은 선군정치를 본격적인 핵무장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핵·미사일 역량을 위기와 대화가 반복되는 교착 국면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체결되자 남한의 민족해방 진영은 이를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규정하고 민족민주전선 재편을 주장합니다. 북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남한의 점진적 개혁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민족민주전선론을 다시 정식화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조직노선에서 일정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과거 민족해방 진영의 전략이 민족민주전선체에 기초한 민자정-연방제라는 단계론적 변혁-통일론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민족민주정당에 기초해서 민자정-(낮은 단계의)연방제로 이행한다는 식으로 조직노선이 수정됨

니다.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민주노동당의 창당이라는 주객관적 정세의 변화 속에서 민족해방 진영은 진보정당을 일종의 통일전선체로 간주하고 민주노동당으로의 조직적 입당을 결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동시에 노동조합 수준에서 자주민주통일 전국현장조직 건설, 연대체 수준에서 전국민중연대-통일연대 건설로 민족민주전선 재편이 추진됩니다.

이러한 구상 아래 민주노동당의 당권을 장악한 민족해방 진영은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채택한 뒤 국민참여당과 합당하여 통합진보당을 결성했습니다. 물론 이는 야권연대나 연립정부 참여를 통해 민주자주정부를 수립한다는 민족민주전선론에 따른 결과였죠. 정당운동뿐만 아니라 대중조직과 연대체 수준에서 공히 민족민주전선을 강화한다는 이러한 민족해방 진영의 ‘10년의 전망’은 민주노동당의 분열 외에도 민주노총의 정파적 갈등, 전국민중연대의 해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족해방 진영의 주류로 부상한 ‘경기동부연합’ 또는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모습은 민족해방 노선의 모순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공당(公黨)이라면 헌법과 법률을 잘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민은 헌법 밖 진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현재 이석기 의원 등에게 제기되는 혐의가 “헌법의 기본정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 정의당이 보이는 태도는 ‘자신은 위기와 무관하다’는 전형적으로 기회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이들은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논리를 동원하여 ‘진보정당’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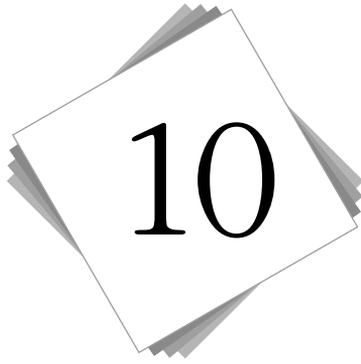
이석기 의원 등이 비판받아야 할 이유를 정의당과 같은 식으로 일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의 헌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효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군사 독재정권의 개악으로 후퇴하기도 하고, 기존 질서와 체계를 넘어서는 민중들의 역동적 투쟁으로 진전되기도 하며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만 들어져 왔습니다. 1960년 4·19혁명, 1987년 6월 항쟁 및 7·8·9 노동자 대투쟁을 통한 개헌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식으로 현재의 법률을 절대시한다면, 잘못된 법률은 영영 고쳐지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도 민주주의는 기존의 헌법적 또는 가장 지배적인 질서를 넘어서며 발전해 왔습니다. 신이 아니라 인간이 권리를 가지기 위해, 군주가 아니라 시민이 권리를 가지기 위해,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

도 권리를 가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질서를, 헌법을 피를 흘리며 무너뜨렸습니다. 이렇듯 ‘헌법 밖 진보’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큰 힘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국회에 진출해있는 원내정당이면서 동시에 ‘진보’정당입니다. ‘현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시키고자’하는 진보정당이라면 필연적으로 기존 질서를 넘어서는 운동도 벌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공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본다면, 진보정당은 국회 진출을 해서는 안 되고, 기존 질서에 찬성하는 정당만이 국회에 진출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이번 사태가 헌법과 법률의 틀을 벗어났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식으로만 비난한다면, 헌법과 법률의 틀을 넘나드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들과 진보정당의 운동의 범위를 봉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질서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는 앞으로도 대중적 토론과 운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보진영은 무엇을 해야 하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권과 우파의 '중북' 딱지 붙이기 마녀사냥이 연일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보=통합진보당=중북이라는 부당전제를 깔고 있는 이데올로기 공세의 노림수는 분명합니다. 중북과 폭력의 이미지로 얼룩진 통합진보당이라는 '악한 고리'를 타격하여 진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허물어뜨리려는 것이지요.

통합진보당뿐만 아닙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등 통일운동 진영에 대한 탄압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반값등록금 투쟁 확산을 차단하려 했고, KEC·발레오만

도·상신브레이크·유성기업 등 민주노조의 핵심 사업장을 파괴하는 시나리오에도 개입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안정국을 조성함으로써 국정원 개혁 여론을 잠재우는 한편 자신에 비판적인 사회운동을 위축시키려 합니다. 사회운동은 박근혜 정부에 맞서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인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을 펼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혁신하기 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비단 공안탄압으로부터 발생하는 위기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적어도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부터 계속되는 진보진영 전반에 대한 대중적 불신으로부터 발생하는 위기로 보아야 합니다. 정권의 공안탄압과 우파의 여론공세에 맞서 함께 싸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추락한 진보의 표상을 새롭게 재구성하지 못한다면 민중의 신뢰는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이념과 노선을 성찰하고 혁신하기 위한 공동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몇 가지 방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운동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평화주의로서 국제주의를 자신의 이념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올 상반기 한반도 위기 정세에서, 남한의 민족해방 진영은 북한의 핵무장을 대미 협상수단 또는 자위수단으로서 인정하거나 평화협정 체결의 결정적인 지렛대라며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절멸을 예고하는 핵전쟁에서 ‘불의의 전쟁’과 ‘정의의 전쟁’의 구별은 애당초 무의미합니다. 대신 평화라는 이상에 따라 사회운동은 ‘일방적 군비 축소’와 ‘군사동맹 폐기’와 같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자신의 이념으로 채택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남한 사회변혁의 새로운 전망을 토론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 무장이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곤란을 반증한다면, 그에 조응하는 남한 민족해방 진영의 핵무장 옹호는 역설적이게도 남한 사회변혁 전망의 빈곤을 반증합니다. 민주노동당의 당권을 장악한 민족해방 진영은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채택한 뒤 국민참여당과 합당하여 통합진보당을 결성했습니다. 야권연대나 연립정부 참여를 통해 민주자주정부를 수립한다는 민족민주전선론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북한 사회주의의 역사적 모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남한 사회변혁의 전망을 새롭게 수립해야 합니다.

위기를 부정하는 것은 위기를 지연하는 것일 뿐, 사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뼈아픈 일이지만 오류를 인정하고 모순을 작동시킬 때 비로소 위기는 해결될 것입니다.

국정원 '내란음모' 사태 10문 10답

발행처 사회진보연대

주소 121-865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59-12번지 3층

전화 02-778-4001~2

팩스 02-778-4006

홈페이지 www.pssp.org

대표 E-mail pssp@jinbo.net

발행일 2013년 9월 16일



사회진보연대는

IMF 외환위기 직후

공공부문 민영화, 비정규직 확산 등 신자유주의에 맞선

새로운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1998년 출범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노동조합을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과 연대의 힘에 기초하여
대안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사회진보연대를 후원해주세요!

사회진보연대는 정부 보조금, 기업 후원금과 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회원들의 회비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 정기적으로 후원하기

월 정액 후원금을 납부하는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사회진보연대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사회운동』을 우편으로,

주간 웹소식지 《사회화와노동》을 비롯 각종 소식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홈페이지(<http://www.pssp.org>)에서 후원회원에 가입하거나,

주변의 사회진보연대 회원에게 문의하세요.

• 한번 후원하기

한 번의 후원도 사회진보연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계좌: 하나은행 771-910262-85707 정영섭

※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문의: 전화 02-778-4001~2 / 이메일 pssp@jinbo.net